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

학생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"않은"을 "아니한"으로 한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인준 받을"을 "인준받을"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"산하기구"를 ""산하기구"라 한다"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해임된"을 "사퇴한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보존해야"를 "보존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노력해야"를 "노력하여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「사무처리세칙」으로"를 "세칙으로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본회"를 "본회의"로 하고, 제3항 중 "본회"를 "본회의"로 하며,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.
 - 1.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
 - 2.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
 - 3.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
 - 4.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. 단,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학생총회"를 "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"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"상의"를 "상위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"를 "회칙·세칙·규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장으로 한다"로 하고, 제3항 중 "진행해야"를 "진행하여야"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세칙) 그 밖에 의결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당될 경우"를 "해당할 때에"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2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3.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
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. 의장은 전체학생총회 개회 10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- 4.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. 단,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 - 2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 - 3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 - 4.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
- 5. 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,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6. 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1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 - 1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 - 2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 - 3.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- 2. 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 - 1.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 - 2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 - 3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 - 4.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- 4. 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,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1/3"을 "3분의 1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/10"을 "10분의 1"로, "1/8"을 "8분의 1"로 한다.

제25조 중 "대중"을 "본회 회원"으로 한다.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(지위)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본회 최고의 의사결정투표이다. 학생 총투표의 의결은 학생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.

제27조 중 "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"을 "본회의 회원"으로 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8조(형식)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.

- 1. <삭 제>
- 2. <삭 제>
- 3. <삭제>
- 4. <삭제>
- 5. <삭 제>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9조(권한)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.

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각 호를 각각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. 단,
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
 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.
 - 1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
 - 2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
 - 3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
 - 4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되었을 때
 - 5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

- 2. 제1항제1호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전체학생대 표자회의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. 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안건상정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한다.

- 1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-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- 3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- 4.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 투표로 부의된 경우
- 5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

제31조의 제목 "성립·의결·요건"을 "성립·의결 요건"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2조 중 "개표완료시부터"를 "개표완료 이후"로, "중앙투표관리위원회"를 "학생총회 의장"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"시행"을 "시행일"로, "결정"을 "의결"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"1/20"을 "20분의 1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결정"을 "의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29조"를 제27조"로, "1/8"을 "8분의 1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개표완료시부터"를 "개표완료 이후"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"전학대회"를 ""전학대회"라 한다"로, "위임 받은"을 "위임받은"으로 하고, 같

은 조 제2항 중 "의결과 동등한 효력"을 "의결에 준하는 효력"으로 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구성) 전학대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.

제35조제1항 중 "전학대회의 대의원"을 "전학대회 대의원(이하 "대의원"이라 한다)"이라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"각 학부·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"을 "각 학부·학과학생회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 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, 그 밖에 대의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대의원은 임기만료·탄핵·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- 3.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새내기학생회 소속 대의원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.
- 4.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. 단,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.
- 5.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대의원 정수) 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, 비례 대의원석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6조 제2항 중 "표명해야"를 "표명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3항 중 "참여해야"를 "참여하여 야"로 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권한) 전학대회는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.

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,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.
-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.

제38조제1항의 "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"를 "제165조제2항에 따른 매 분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"어느 하나에 의해"를 "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"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"를 "개회 5일 전에 전학대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"로, "2/3"을 "3분의 2"로 한다.

- 1.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2.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3.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4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5. 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
- 6.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
- 7.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
- 8. 제18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또는 제191조제3항에 따른 세칙·규칙 제정안 또는 폐지 안이 발의되었을 때

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9조(안건의 상정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.

- 1.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- 2.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
- 3.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- 4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- 5. 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
- 6. 전학대회 의장이 그 밖에 전학대회의 심의·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안건의 상정 시기) 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. 단, 회칙·세칙·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.
- 2. 제39조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. 단, 회칙·세칙·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.

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.
- 2.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.

제41조 중 "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"를 "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심의·의결하거나"로 한다.

제43조제1항을 중 "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"를 "상설위원회 위원장·상설위원회 부위원장·전문기구장의"로, "의결"을 "심의·의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결"을 "심의·의 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"을 "심의·의결"로 한다.

제44조제1항 및 제4항의 "전학대회 대의원"을 "대의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"(중 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)"를 "단, 해당 대의원이 중

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45조제1항의 "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"를 "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의 "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"를 "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"로 하며, 같은 조제3항의 "채택한다"를 "심의·의결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회계"를 "재정"으로, "인상·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"를 "인상·인하안을 심의·의결한다"로 한다.

제47조제2항의 "전학대회 정기회의"를 "전학대회 정기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"회원 전체의 명의"를 "본회의 명의"로, "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"를 "소송권을 위임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"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"를 "회칙·세칙·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"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"을 "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"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 1호의 "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"을 "상설위원회 위원장·상설위원회 부위원장·전문기구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"대한"을 "관한"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관한 사항
- 6.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관한 사항
- 7. 기금의 타 회계 전용에 관한 사항

제48조제3항 중 "재적 대의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"을 "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"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

호를 삭제하며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9조에 따라 서면의결을 시행하는 안건

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의장은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.
- 2.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0조 중 "대중"을 "본회 회원"으로 한다.

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의2(구성)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2조에서 정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.

제52조제1항제2호의 "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"을 "동아리연합회장"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각 학부·학과학생회장
- 4. 새내기학생회장
- 2.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,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중앙운영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- 3.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 규칙으로 정한다.
- 4.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.

제53조제2항 중 "표명해야"를 "표명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참여해야"를 "참여하

여야"로 한다.

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권한)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,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.

제54조제2항 중 "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"를 "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"로, "중앙운영위원 1 인"을 "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"으로 한다.

제55조제1항 중 "매 달 1회"를 "2주에 1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- 2.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의장이 5일 내에 소집한다.
 - 1.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- 2.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 - 3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
 - 4.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
 - 5.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
- 3. 의장은 회의 24시간 전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단,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.

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6조(안건의 상정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.

- 1. 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- 2.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- 3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

을 발의한 경우

- 4.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
- 5.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집과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
- 6. 중앙운영위원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

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안건의 상정시기) 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. 단, 회칙·세칙·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.
- 2.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. 단, 회칙·세칙·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, 이를 따른다.

제57조제1항 중 "안건을 발의"를 "전학대회에 안건을 발의"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"세부 문제"를 "세부 사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시행 및 시행일"을 "시행일"로 한다.

제58조제1항 중 "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"을 "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국장 임명 동의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"를 "본회 산하기구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"를 "제67조에 따른 집행기구"로 한다.

제59조제2항 중 "선거시행세칙"을 "세칙"으로, "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"를 "당선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자치기구회장단"을 "자치기구"로, "해당 본회"를 "본회"로, "제소할 경우"를 "제기할 경우에"로, "학생회칙 및 자치규칙에 의거하여"를 "회칙·세칙·규칙 및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의거해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가음과 같이 한다.

- 5.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. 제5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3.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다. 제60조제1항 중 "회칙개정안과 세칙·규칙의 제정·폐지안"을 "회칙 개정안과 세칙·규칙 제정·폐지안"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"세칙·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"를 "세칙·규칙 개정안을 심의·의결한다"로 한다.

제62조제1항 중 "직속"을 "산하"로, "위원회"를 "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"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과 같다"를 "다음 각 호로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사안"을 각각 "사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, 예산안 및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4.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.
- 5.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할 수 있다.

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칙·세칙·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 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.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1. 세칙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
 - 2. 제16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
 - 3. 제17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
- 3.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1. 제49조에 따른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
 - 2. 제64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

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의장은 제55조제2항제4호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.
 - 1. 전학대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발의안
 - 2.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
 - 3. 그 밖에 회칙·세칙·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
- 2.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5조 중 "대중"을 "본회 회원"으로 한다.

제69조 중 "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."를 "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."로 한다.

제83조제3항 중 "해당 연도 말"을 "1분기 초"로 한다.

제166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가을 학기"를 "3분기"로, "연도말"을 "1분기 초"로, "결정"을 "심의의결"로 한다.

제154조제2항 중 "『선거시행세칙』"을 "세칙"으로 한다.

제156조제1항 중 "『선거시행세칙』"을 "세칙"으로 한다.

제159조의 제목 중 "선거시행세칙"을 "세칙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「선거시행세칙」"을 "세칙"으로 한다.

제164조의 제목 중 "재정운용세칙"을 "세칙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「재정운용세칙」"을 "세칙

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회칙 시행 이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타 세칙의 개정) 재정운용세칙 제15조제1항 중 "전년도 말"을 "전년도 1분기 초"로, "당해년도 여름학기"를 "당해 연도 3분기 초"로 한다. 제20조제1항 중 "하반기 제2차"를 "1분기 초"로 한다.